

# 피의사실공표죄

## 강화할 것인가, 폐지할 것인가?



글. 한위수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 I. 사법파동과 피의사실공표죄

#### 1. 사법파동

‘사법파동’<sup>1)</sup>이란 1971. 7. 28. 검사가 행정부에 비협조적인 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영장청구사실 및 영장의 피의사실이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면서 판사들이 사법권독립의 침해를 이유로 대거 집단사표를 낸 사건을 말한다.

사건의 발단은 1971. 7. 28. 서울지검 검사가 당시 서울형사지법의 한 재판부가 반공법 위반 항소사건을 심리하면서 출장길에 변호사로부터 숙식비 등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이유로 재판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다. 판사들은 위 영장청구가 재판장 개인에 대한 비위수사가 아니라 당해 재판장 등 법원이 시국사건 등에서 무죄 선고를 많이 한 데 대한 보복으로 보아 크게 반발하였으며 나아가 검사가 당해 재판장에게 미행까지 붙인 사실에 더욱 분노했다.

한편, 1차 구속영장이 기각되었지만, 검찰은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구속영장의 내용까지 언론에 공개하였는바, 2차 영장까지 다시 기각되고 재재청구가 들어오자 판사들은 사법권의 독립에 대한 위협이라고 하여 일제히 들고 일어섰다. 마침내 1971. 7. 29. 서울형사지법 판사 39명의 집단사표를 시작으로 하루 만에 총 150여 명의 판사가 사표를 내었으며(당시 전국 법관 415명의 3분의 1 이상에 달한다), 서울민사지방법원과 서울형사지방법원의 판사들은 ‘사법권수호건의문’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국회에서도 이를 문제 삼고 언론에서도 검찰의 처사를 맹비난하기에 이르러, 결국 같은 해 8. 1. 대통령이 나서 법무부 장관에게 판사들에 대한 수사중지 지시를 내리고, 국무총리와 법무부 장관이 국회 답변을 통하여 사과의 뜻을 표하였다. 그리고 대법원장의 간곡

1) 이에 대하여는 法院史(법원행정처, 1995), 489면 이하 참조. 한편, 이 사건에 대한 간략한 소개로는 <http://news.donga.com/3/all/20130515/55156431/1> 참조(2014. 3. 5. 접속).

한 당부에 따라 같은 해 8. 27. 재경 전체 법관 회의의 사표 철회 결의를 필두로 판사들이 사표를 철회함으로써 일단락되었다.

이러한 사법파동의 원인과 의의에 대하여는 여러 견해가 있을 수 있고, 이를 다루려면 상당한 지면을 할애해도 모자랄 형편이다. 그러므로 이 글에서는 사법파동의 원인 중 하나인 검찰이 공소제기 전에 구속영장청구를 하면서 언론에 피의사실을 공표한 사실에 주목하여 형법 제126조의 피의사실공표죄에 대한 논란을 살펴보고자 한다.

## 2. 피의사실공표죄 – 무엇이 문제인가

우리 형법 제126조는 “검찰, 경찰 기타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지득한 피의사실을 공판청구 전에 공표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범죄의 주체는 “검찰, 경찰 기타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이고, 또한 위 죄는 시간상으로 공판청구 전에 한하는데, 이는 공판이 청구되면 공개재판의 원리상 공소사실 역시 공개법정에서 일반에게 공개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처럼 우리나라는 형법 제126조에서 수사기관이 공소제기 전에 피의사실을 공표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사법파동이나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보듯 수사기관에 의한 피의사실공표는 너무나도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고, 더욱 특이한 것은 지난 25년간 수백 건의 고소에도 불구하고 실제 기소된 것은 한 건도 없다는 것이다.<sup>2)</sup> 이는 피의사실공표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위법성조각



1971년 7월 29일, 서울형사지법에서 판사 39명이 집단사표를 쓰고 있는 모습 (출처: 한겨레, 「판사 친척 뒷조사에 형량지정까지」, 2005년 3월 7일자)



1971년 8월 27일, 사표 철회를 결의하고 있는 재경 법관회의 모습 (출처: 동아일보, 「정권에 비협조 판사 구속하려 하자 150여명 집단사표」, 2013년 5월 15일자)

2) 경찰청의 피의사건공표죄 사건처리현황에 따르면 1994~2000년 사이에 불구속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예가 단 1건 있다고 하며(이근우, “중간수사발표에 대한 피의사실 공표죄 적용의 몇 가지 쟁점”, 비교형사법연구 10권 1호(2006), 255면 주3) 참조, 실제 1989년부터 2013년까지 25년간 피의사실공표 사건은 총 432건 접수됐으나 기소는 단 한 건도 없었다고 한다. <http://www.journalist.or.kr/news/articleView.html?idxno=32489> 참조(2014. 3. 5. 접속).

사유가 있는 때에는 처벌할 수 없으며, 피의사실공표죄의 주체가 수사기관이므로 같은 수사기관인 검사가 기소를 꺼리는 것이 그 한 원인이 되었을 것임은 부인할 수 없다.

이러한 현상에 대하여 피의사실공표는 언론에 의한 여론재판으로 피의자로서는 변명할 기회도 없이 유죄로 단죄되어 버리고 정치적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피의사실공표죄를 대폭 강화하여야 한다는 견해와 반대로 피의사실공표죄는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여 위헌성이 있고 실제로 처벌되는 사례가 없어 실효성이 없으며 오히려 정치적 논란만을 가중하므로 차라리 폐지함이 타당하다는 견해가 맞서고 있다.

## II. 피의사실공표죄의 법적 쟁점

### 1. 피의사실공표죄의 입법취지

피의사실공표죄의 입법 취지는 1953년 제정 당시 국회에서의 논의 과정부터 피의자인권보호가 강조된 점<sup>3)</sup> 등에서 피의사실공표로 인하여 침해될 수 있는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형법조문의 체계상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항목에 규정되어 있고, 피의사실공표로 인하여 증거인멸 등 범죄수사에 지장을 초래할 수도 있으므로 국가의 범죄수사권 또한 부수적으로 보호법익이 될 수 있을 것이다.<sup>4)</sup>

### 2. 피의사실공표죄의 주체

법규정상 “검찰, 경찰 기타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만이 범죄의 주체가 되는 이른바 신분범이다.

그러나 언론사 기자 등 수사관계자가 아닌 자라도 수사관계자를 교사하거나 적극 가담한 경우에 형법 제33조 본문에 의하여 교사범이나 공동정범이 될 수 있다.<sup>5)</sup> 이는 우리 형법 제33조가 “신분관계로 인하여 성립될 범죄에 가공한 행위는 신분관계가 없는 자에게도 전 3조(공동정범, 교사범, 중범)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피의사실공표죄는 불가피하게 공소제기 전 수사상황을 보도하려는 언론에 위축 효과(chilling effect)를 초래하여 국민의 알 권리 내지 언론의 자유와 밀접히 관련될 수밖에 없다.

3) 형사법령제정자료집(1), 한국형사정책연구원, 353면(엄상섭 의원발언) 등.

4) 신정훈, “피의사실공표죄의 형법적 한계”, 비교형사법연구 8권 2호(2006), 174면.

5) 주석 형법각칙(1)(민병훈 집필 부분) (한국사법행정학회, 2006), 300면; 김재윤, “피의사실 공표죄 관련 법적 쟁점 고찰”, 언론중재 2010년 겨울호, 102면; 신정훈, 앞의 글, 177면 등. 반대 견해로는, 원혜옥, “수사과정에서의 범죄보도와 프라이버시 보호”, 사법 8호(사법연구지원재단, 2009), 17면 참조.

### 3. 피의사실공표죄의 위법성조각사유

형법상 피의사실공표죄에 대한 위법성조각사유에 대하여는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법원은 피의사실공표행위가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며 또한 위법성조각 여부를 판단함에 고려할 요소를 제시하고 있는바, 이를 굳이 분류하자면 형법 제20조가 규정하는 정당행위로서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9. 1. 26. 선고 97다10215, 10222 판결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다.

일반 국민들은 사회에서 발생하는 제반 범죄에 관한 알 권리를 가지고 있고 수사기관이 피의 사실에 관하여 발표를 하는 것은 국민들의 이러한 권리를 충족하기 위한 방법의 일환이라 할 것이나, ...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행위는 공권력에 의한 수사결과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국민들에게 그 내용이 진실이라는 강한 신뢰를 부여함은 물론 그로 인하여 피의자나 피해자 나아가 그 주변 인물들에 대하여 치명적인 피해를 가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수사기관의 발표는 원칙적으로 일반 국민들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항에 관하여 객관적이고도 충분한 증거나 자료를 바탕으로 한 사실 발표에 한정되어야 하고, 이를 발표함에 있어서도 정당한 목적하에 수사결과를 발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에 의하여 공식의 절차에 따라 행하여져야 하며,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여 유죄를 속단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현이나 추측 또는 예단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표현을 피하는 등 그 내용이나 표현 방법에 대하여도 유념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행위가 위법성을 조각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공표 목적의 공익성과 공표 내용의 공공성, 공표의 필요성, 공표된 피의사실의 객관성 및 정확성, 공표의 절차와 형식, 그 표현 방법, 피의사실의 공표로 인하여 생기는 피침해이익의 성질,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대법원의 입장<sup>6)</sup>은 피의사실공표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음을 보이면서도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 요건을 상당히 엄격하게 제시함으로써 피의사실공표로 인한 피의자인권의 보호와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이라는 두 법익의 균형을 잘 지키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sup>7)</sup>

6) 위 판결은 피의사실공표를 이유로 한 민사상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 관한 것이기는 하나 위 판결에서 설명하여 제시한 법리는 형사상의 피의사실공표죄의 위법성조각여부에 대하여 달리 볼 아무런 이유가 없으므로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반면, 민사사건에 대한 위 판례이론을 형사상 피의사실공표죄에 적용하는데 부정적인 입장으로는, 이근우, 앞의 글, 269면.

7) 한편, 위 대법원의 입장에 비판적인 견해로는, 박혜진, “형법적 관점에서 바라 본 피의사실공표죄의 제문제”, 비교형사법연구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011), 181면.

### Ⅲ. 피의사실공표죄를 강화할 것인가

피의사실공표죄를 강화하여야 한다는 견해<sup>8)</sup>는, 피의사실공표는 언론에 의한 여론재판으로 피의자로서는 변명할 기회도 없이 유죄로 단죄되어 버리므로 피의자의 인권을 치명적으로 침해하는 것인바, 피의사실공표죄가 형법상 엄연히 규정되어 있음에도 검찰이 제대로 기소하지 아니하여 피의사실공표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예에서 보듯이 정치적으로 악용되고 있으므로 이를 강화하여 피의사실공표행위를 근절하자는 입장이다.

피의사실공표죄를 강화하는 방안으로는, (1) 피의사실공표죄가 사문화된 가장 큰 원인은 검사가 기소독점권을 가지고 이를 편의대로 하는 데에 있는 것이므로, 피의사실공표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면 무조건 기소하게 하는 방안<sup>9)</sup>, (2) 공익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수사 상황을 공개하더라도 수사기관 공보담당자의 공식발표 외에는 모두 유죄로 하는 등 법적으로 엄격하게 규정한 경우에만 면책되도록 하는 방안<sup>10)</sup>, (3) 피의사실공표죄의 법정형을 대폭 높여서 피의사실공표를 억제하는 방안 등이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1) 검찰에 의한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는 우리 형사사법의 큰 틀인데, 피의사실공표죄가 제대로 처벌되지 아니한다면 재정신청제도의 활성화 등을 통하여 해결하는 것이<sup>11)</sup> 정도이지 함부로 기소법정주의를 도입함은 더 큰 부작용이 우려되고, (2) 공보담당자의 공식발표만 면책되게 할 경우는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 등의 피의사실을 은폐할 경우 이를 보도할 방법이 없게 되고 나아가 언론이 수사기관의 공식발표만을 보도하는 대변인 역할을 하게 될 우려가 있으며, (3) 법정형을 높이는 것만으로는 기소조차 되지 아니하는 피의사실공표의 남용을 방지하는 데에는 아무런 실효성이 없다는 점이 지적될 수 있다.

### Ⅳ. 피의사실공표죄 폐지론

한편, 피의사실공표죄 조항을 통하여 범죄은폐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고 범인에 대한 공개

8) 주석 형법각칙(1), 앞의 책, 299면 등.

9) 김재윤, 앞의 글, 109면; 이근우, 앞의 글, 106~107면 참조.

10) 2013년경 국회에서는 경찰과 검찰 관서별로 공보업무를 전담하는 담당자를 지정해 해당 공보담당자가 수사와 관련된 사실의 공표업무를 담당하고, 이들이 발표한 경우만 피의사실공표죄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의 형법개정안을 발의된 바가 있다고 한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6&oid=086&aid=0002145993> 참조(2014. 3. 8. 접속).

11) 실제로 2011. 7. 18. 법률 제10864호에 의하여 피의사실공표죄에 대하여는 고발인도 재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이 개정되었다.

수배 등 범죄보도를 통하여 범죄수사에 국민의 협조를 받을 수도 있으므로 굳이 이를 입법화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 형법개정 당시부터 주장되기도 했고<sup>12)</sup>, 1992년 형법개정법률안 기초과정에서도 피의사실공표죄가 실효성이 없고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폐지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하였던바<sup>13)</sup>, 피의사실공표죄의 폐지를 주장하는 견해는, (1) 피의사실공표죄는 필연적으로 국민의 알권리와 언론의 자유를 제약하므로 그 자체 위헌성이 있으며, (2) 다른 나라에서는 예를 찾아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3) 수십 년간 1건도 기소되지 않는 등 실효성이 없는데 정치적 공방의 대상만 되므로 이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sup>14)</sup>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그러나 (1) 국민의 알 권리 못지않게 피의자의 인권도 존중되어야 할 것이므로 피의사실공표죄를 처벌하는 것 자체가 위헌성이 있다고 할 수 없고, (2) 독일과 프랑스에서도 비슷한 처벌조항이 있으며<sup>15)</sup>, (3) 제대로 처벌이 되지 않으면 제대로 처벌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지 실효성이 없다고 이를 폐지함은 본말이 전도되었다는 비판이 지적된다.

## V. 피의사실공표죄 어떻게 할 것인가

피의사실공표죄의 가장 큰 문제점은 피의사실공표죄가 형법상 범죄로 엄연히 규정되어 있음에도 피의사실공표가 비밀비재하고 나아가 관행처럼 되어 있음에도 수십 년간 처벌은커녕 기소조차 된 사례가 없다는 점이다. 이는 범죄의 주체가 수사기관인데 그 기소를 맡은 검사 역시 같은 수사기관이어서 기소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데도 그 원인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재정신청제도 등을 활용하여 부당한 피의사실공표에 대하여는 기소를 사실상 강제하도록 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국민의 알 권리 등과 관련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피의사실공표의 기준을 분명히 함으로써 피의사실공표의 남용을 방지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12) 형사법령제정자료집 (1), 344면(변진감의원 발인)

13) 문성도, "경찰홍보의 형법적 한계-범죄수사발표행위의 피의사실공표죄 성립여부를 중심으로", 경찰대논문집 12집(2001), 175면 참조, 또한 단서규정으로서 '다만,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때에는 별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삽입하여 위법성조각 사유를 명시하고자 하는 개정시도가 있었지만, 논란 끝에 1995년 개정형법에는 반영되지 않았다고 한다.

주승희, "피의사실공표죄의 법적 쟁점 검토-공개수배 및 검찰수사공보의 정당성 요건을 중심으로", 고려법학(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011), 153면.

14) <http://www.journalist.or.kr/news/articleView.html?idxno=32489> 참조.

15) 외국의 사례에 대하여는, 박혜진, 앞의 글, 163면 이하 참조. 이에 따르면, 독일 형법 제353조d 제3호는 "공소장, 기타 형사소송절차, 과태료부과절차, 징계절차에 관한 관청 문서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을 공판에서의 낭독 또는 소송절차 종료 이전에 공연히 공개한 자"를 처벌하고 있다고 하며(위 글, 165면 주13 참조), 한편, 프랑스 신형법 제226-13조, 226-14조(구형법 제378조)은 "사실상 또는 직업상 비밀의 성격을 지닌 정보를 소지하고 있는 자가 이를 공표한 경우"를 처벌하고 있다고 한다(원혜옥, 앞의 글, 18면 주29 참조).

한편, 검찰에서는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법무부훈령 제903호)<sup>16)</sup>을 제정하여 공소제기 전 혐의사실 및 수사상황의 공개를 금지하되(제9조 제1항), ‘사건관계인의 명예 또는 사생활 등 인권을 침해하거나 수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중대한 오보 또는 추측성 보도를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에 한하여 수사내용을 공개하되(제10조 제1항),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에 한하는 등(제13조 제2항) 공보의 방식과 절차, 범위 등을 규정하고 있다. 국회에서도 피의사실공표죄에 대하여 ‘고위공직자 등이 관련되거나 기타 국민적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건 또는 불특정다수인의 생명, 재산, 명예 등에 관계되는 중요사건에서 국민들의 의혹 또는 불안을 해소하거나 범죄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는 때’에는 혐의사실과 수사상황 등을 공식적으로 발표·공개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그러한 수사상황 등의 발표·공개는 일정 조건을 준수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때에는 형사처벌하도록 하는 법률개정안<sup>17)</sup>이 발의되기도 하였는바, 이들은 모두 그러한 노력의 산물이라고 할 것이다.

다른 한편, 피의사실공표죄는 국민의 알 권리와 언론의 자유를 제약할 우려가 있음을 간과할 수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의사실공표죄는 다른 나라에서는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며<sup>18)</sup>, 우리나라와 법제도가 유사한 일본의 경우 피의사실공표죄에 대한 형법 규정이 없음은 물론, 일본 형법 제230조의2 제1항은 “전조 제1항의 행위(명예훼손행위)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실에 관련하고 그 목적이 오로지 공익을 도모하는 데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사실의 진부를 판단하여 진실인 것의 증명이 있는 때에는 이를 별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 “아직 공소가 제기되지 아니한 자의 범죄행위에 관한 사실은 이를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실로 간주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오히려 공소제기 전의 범죄사실의 공표에 대한 처벌에 부정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더구나 언론매체들의 기본적인 과제는 국민들이 원하는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라 할 것인데, 국민적 관심을 끌 정도의 중요한 범죄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보도가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데 필요하며, 나아가 연쇄살인범 등 흉악범인의 추적보도는 국민의 안녕에도 관계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그러나 언론매체들이 중요사건의 수사에 대한 정보를 확보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피의사실공표죄를 엄

16) 이에 대한 소개와 평가로는, 주승희, 앞의 글, 172면 이하 참조.

17) 이에 대한 소개 및 평가로는, 김재운, 앞의 글, 105~106면 참조.

18) 박선영, 언론정보법 연구 I, 법문사(2002), 293면; 신정훈, 앞의 글, 174면. 우리나라의 피의사실공표죄와 비슷하다는 독일 형법 제353조 제3항도 어디까지 공소장 등을 ‘원문 그대로’ 공개하는 것을 금하고 있을 뿐 내용의 공표 자체를 금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이며, 프랑스 형법 역시 일반적인 ‘공무상 비밀누설’에 관한 것일 뿐 피의사실공표를 특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 앞의 주 13) 참조.

격히 적용할 경우 사실상 이에 대한 신속하고도 정확한 보도는 기대하기 어렵고 오히려 부정확한 추측보도를 부추기게 될 우려도 있다. 따라서 공소제기 전이라도 수사기관에서 수사상황에 대하여 공식발표를 하는 것이 당해 수사에 대한 신속하고도 정확한 보도를 위해서 오히려 더 요망될 수도 있다.<sup>19)</sup>

결국, 피의사실공표행위는 알 권리와 관계에 비추어 이를 무조건 처벌하거나 처벌을 강화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며, 특히 법률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 이외에는 무조건 처벌하도록 하는 것은 사법부의 재판권을 침해할 우려도 있고, 명예훼손의 비형사화(非刑事化) 경향 등 세계적인 조류에도 어긋날 소지가 있다.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우리 대법원은 피의사실공표가 정당화될 수 있는 기준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고, 피의사실공표죄로 형사처벌된 사례는 없다고 해도, 수사기관의 피의사실공표에 대하여 민사책임을 인정한 사례는 위 대법원 1999. 1. 26. 선고 97다10215, 10222 판결 등 다수가 있다.

그렇다면 피의사실공표죄를 선불리 강화하는 법률개정을 하거나 이를 폐지하기보다는, 피의사실공표가 남용되는 경우는 엄격하게 제재를 가하되, 피의자의 인권과 함께 국민의 알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배려함이 우선이라고 할 것이다.

---

19) 장영수, “수사기관의 발표에 의한 오보와 면책범위”, 언론중재 24권 4호 (2004.12), 27면.